

2023 SK에너지 행복나눔 난방비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 ✓ SK에너지와 (재)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SK에너지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내용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개요 및 일정

□ 사업 목적

- 2023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유를 지원해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

□ 대상 기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가구
지원물품	SK에너지 주유상품권 5만원권	
	40장 (200만원) / 개소	6장 (30만원) / 가구
신청방법	시설 자체 신청	지자체 경유 신청 (개인 X)
지원개소	예산 소진 시점	
대상 기준	① 난방원	등유 사용(등유 포함한 혼합 난방원 사용 시 신청 가능)
	② 시설조건	② 가구조건
	1. 생활시설, 이용시설 2. 직접 복지서비스 수행 시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3. 미신고, 간접 수행 시설 제외	1.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2. 위기구호 가구 - 다문화, 미혼모, 장애인, 재난·재해 저소득가정 등
	③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23년 상반기 난방유 지원 사업 수혜자 -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지원」 및 「SK에너지 행복나눔 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2. 유사 사업 수혜자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정부 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별 ①, ②, ③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진행 일정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대상자 추천 및 접수	2023. 8. 23.~9. 18.	- 지자체, 복지시설, 유관기관에서 발굴 및 추천 - 신청 접수(시스템 접수)
↓		
대상 심사 및 선정	9. 19.~10. 11.	- 대상자 선정 적격 심사
↓		
대상자 발표	10. 12.	- 시설 및 가구 선정 - 홈페이지 게재, 담당자 SMS 및 메일 통지
↓		
난방비 지원 상품권 지급 및 수령 확인	10. 12.~10. 31.	- 주유 상품권 유가증권 발송 - 수령 확인 및 인수확인증 회신 - 부정 수급 방지 및 준수사항 안내 - 증빙 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 제공지
↓		
결과 보고 취합 및 확인	~ 2024. 2. 29.	- SK에너지/엔크린 주유소 사용 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점검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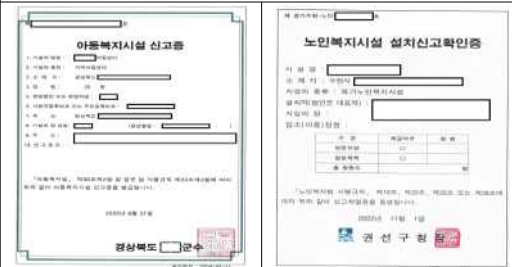
2 접수 방법

□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8. 23.(수) ~ 9. 18.(월)
- 접수 창구 : 자체 신청 홈페이지(<https://oil.koref.or.kr>)
 - * 접수 시 기타 증빙 서류 첨부 필수, 기타 작성법 [붙임 2] 참조
- 접수 구분
 - (시설) 자체 신청
 - (가구) 전국 지자체*에서 경유 신청(최대 20가구 / 재해·재난 5가구 이하)
 - * (지자체) 광역, 기초 지자체, 읍/면/동 각 개별 신청

ex) OO군 내 행정복지센터 5개소인 경우 군청 포함 6개소 * 20가구 = 120가구 추천 가능

□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서 상의 “접수 정보/제출서류 업로드” 란에 사본 파일 첨부 (PDF, JPG, JPEG, PNG 파일만 첨부 가능)			
구 분	제출 서류			
사회복지 시설	- 시설신고증, 시설 고유(사업자)등록증 각 1부			
	시설신고증		고유(사업자)등록증	
				
	- 시설신고증, 고유(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가 신청서상의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선정 탈락			
취약계층 가구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본 1부 [별첨 1] - (일반취약) 취약계층 가구 증명서 1부 - (위기구호) 위기구호 대상자 확인서 1부 [붙임 4]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조손가구	위기구호가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일반 취약계층 가구 (제출서류) 취약계층 가구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취약계층 가구 증빙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계층 관련 용어를 포함한 공문서 일체 예 차상위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증명 -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중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위기구호 가구 관련 (제출서류) 위기구호 대상자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위기구호 가구”는 공문서를 통한 증빙이 불가하나 난방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가구로서 <u>지자체 추천을 통해 지원</u> * 재난·재해 가구는 전체 20가구 중 5가구 이하 추천 가능 - 위기구호 가구 확인서는 <u>추천 지자체의 직인을 포함해야 함</u>				

3 | 상품권 사용 및 결과보고 절차

□ 유류상품권 발송 및 사용

- 대상자 선정 : 2023. 9. 19. ~ 10. 11.
 - 예산 부족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지역 균형 (2순위) 취약계층 가구 (3순위) 위기구호 가구
 - 대상자 발표 : 2023. 10. 12. (예정)
 - 상품권 발송 (발표일부터 순차 발송)
 - (시설) 신청서 내 시설 주소로 등기 발송
 - (가구) 경유 신청한 지자체 담당자 주소로 등기 발송
 - ※ 상품권 수령 후 접수 홈페이지 통한 인수확인증 제출 필수
 - 상품권 배부 및 사용
 - (시설) 인수확인증 제출 후 사용
 - (가구) 인수확인증 (추천 지자체의 인수 확인) 제출 후 지자체 담당자가 유류비 대리 결제
- * 상품권 가구에 직접 지급 불가하며, 배송 방식 등 주유소 사전 협의 권장

□ 상품권 사용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양식(별첨 2) 작성하여 접수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영수증 (지출 내역 전체) 및 사진 (1장 이상) 첨부 필수
- ※ SK에너지/엔크린 주유소의 '실내용 등유' 구매한 전자영수증만 인정,
증빙 불가한 경우 유가증권 반납/환수 조치
- (증빙 불가) - 현대오일뱅크 등 타 주유소 영수증
 - 휘발유/경유 등 타 유종 결제
 - 간이수기영수증/선불권 등 비전자영수증

4 유의 사항

- 가구는 지자체* 경유하여 신청 접수
 - * (지자체) 선정 후 유류 지급·결과보고서 작성 등 수행
-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은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에서 지원함
- SK에너지/엔크린 주유소*에서 등유 구매 어려울 시 지원 불가
 - * (지원 유무) 주유소 또는 자체 배달로 주유 가능해야 지원
- 유사 사업*의 수혜 대상이거나 예정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
 -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정부 난방비 지원 사업 및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긴급 지원 하반기 사업

5 문의

- (재)한국에너지재단 ☎ 02-6913-2132, 2135, 2123, 2145, 2165

붙임1

주유소 검색 안내



<https://www.opinet.co.kr> 접속 후
“싼 주유소 찾기” → “지역별”을 클릭

지역: 경북 > 봉화군 > 읍/면/동

검색방법: ☒ 지역 ☐ 지도 ☐ 상호 ☐ 반경

형태: ☒ 일반 ☒ 셀프 ☒ 불법 ☒ 인증 ☒ 전산

상표: 전체 ☒ SK ☐ GS ☐ Hyundai ☐ S-OIL ☐ ESS ☐ PB

부가정보: ☐ 세차장 ☐ 경정비 ☐ 편의점 ☐ 24시간

조회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검색결과 (총 9개) 불법 셀프 인증 전산			
주유소명			실내등유
평균가격			1375
SK	쌍봉주유소	1300	
SK	봉화주유소	1340	
SK	한일주유소	1350	
SK	창평주유소	1350	

지역 설정 후 상표는 “SK에너지”만 체크
품목은 “실내등유”로 하여 주유소 확인

쌍봉주유소

기본정보

- 전화번호: 054-672-9996
- 주소: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명로 602
- 상표: SK에너지

유가정보

유종	가격	업데이트 일시
보통휘발유	1,599원	2023-02-24 07:09:07
경유	1,559원	2023-02-23 17:11:12
실내등유	1,300원	2023-02-22 17:10:01

* 상기 가격정보는 특정시점에 조사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되는 주유소 위치 확인 후 전화하여
배달 가능, 등유 취급 여부 확인

지역: 경북 > 문경시 > 읍/면/동

검색방법: ☒ 지역 ☐ 지도 ☐ 상호 ☐ 반경

형태: ☒ 일반 ☒ 셀프 ☒ 불법 ☒ 인증 ☒ 전산

상표: 전체 ☒ SK ☐ GS ☐ Hyundai ☐ S-OIL ☐ ESS ☐ PB

부가정보: ☐ 세차장 ☐ 경정비 ☐ 편의점 ☐ 24시간

조회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검색결과 (총 9개) 불법 셀프 인증 전산			
주유소명			실내등유
평균가격			1338
SK	일광주유소	1320	
SK	새재IC주유소	1325	

해당 지역에 없을 시 근처로 범위를 바꾸어
재검색 후 여부 확인
(배달 불가, 등유 미취급 시 지원 불가)

붙임2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작성 방법

○ 복지시설

지원 신청서	주소	- 상품권 수령 가능 주소
	담당자명 휴대전화	- 작성 필수(선정발표 시 문자 발송 등) - 사업 진행 중, 담당자 변경 시 고지 必 * 등기 발송으로 담당자 부재 시 <u>상품권 수령 불가</u>
	사용처	- 난방유 구매 예정 “SK에너지/엔크린 주유소명” 기재 * 배달 가능, 등유 취급 여부 등을 지원 전 사전확인 요망 * 주유소 검색은 붙임1 참고 (https://www.opi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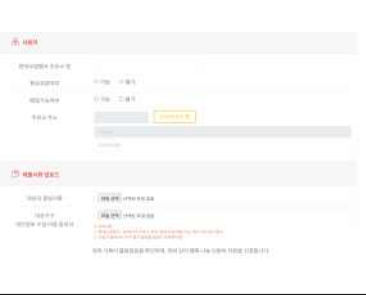
○ 가구

지원 신청서 (기본사항)	주소	- 지원받을 가구 주소
	가족사항	-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 수 기재(총 인원수)
지원 신청서 (추천 지자체)	주소	- 상품권 수령 가능 주소
	담당자명 휴대전화	- 작성 필수(선정발표 시 문자 발송 등) - 사업 진행 중, 담당자 변경 시 고지 必 * 등기 발송으로 담당자 부재 시 <u>상품권 수령 불가</u>
	사용처	- 난방유 구매 예정 “SK에너지/엔크린 주유소명” 기재 * 배달 가능, 등유 취급 여부 등을 지원 전 사전확인 필수 * 주유소 검색은 붙임1 참고 (https://www.opinet.co.kr)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요령	- 지원받을 가구 대상자 작성

붙임3

접수 및 선정 현황 확인 방법

□ 접수 방법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하기” 메뉴 클릭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진행	3  신청 후원사 선택
4  접수 정보 입력 ※ [붙임 2] 참조	5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3p 참조	6  접수 확인증 확인

□ 선정 현황 확인 방법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결과 확인” 메뉴 클릭	2  접수 확인증 상의 정보 입력	3  선정 현황 확인
--	---	--

붙임4

지자체 위기구호 대상자 확인서

위기구호 대상자 확인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성별)		yyyy. mm. dd. (남/여)	
구분	☐	독거가정	☐	장애인가정	☐	조손가정
	☐	미혼모가정	☐	저소득가정	☐	재난재해가정
						기타
해당 내용 기재						
주소	우) 04317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2길 71 101호					
연락처	010-0000-0000					

상기 대상자는 공공·민간 에너지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로
「SK에너지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위기 구호 대상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 기관명: 000 행정복지센터 (직인)

기관 담당자: 000 (인 또는 서명)

(재)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 위 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임5

사회복지시설 범위 및 개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 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 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 법령

- 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⑯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 ⑳ 「다문화 가족 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㉓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㉖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㉗ 「청소년 복지지원법」 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 '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치유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이 가족시설 - 장애영양가 가족시설 - 장애이대기 가족시설 - 장애이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이직재활시설 - 장애이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지료시설 - 폭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 의료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주택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이용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학대대응과			
		○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구정책총괄과			
		○ 아동학대대응과				
		○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장애인	생활	○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보호전문기관			
			· 피해장애인쉼터			
	이용	○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정책과			
	○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보호직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지역주민	이용	○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 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 지역사회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